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향상 방안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of Child Safety Keeper System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김정규, 김문호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Jung-Gyu Kim(khjkk@naver.com), Moon-Ho Kim(moon16459@honam.ac.kr)

요약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아동의 범죄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력치안 프로그램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2009년 시행된 이래 아동범죄 예방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구체적 효과성은 불분명하다. 운영현황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제도발전을 위한 학술적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향상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16개 지역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전체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할당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는 빈도분석, 티검증, 아노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제도발전을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 강화, 아동안전지킴이의 순찰노선에 대한 참여적 편성, 교육관리·감독체계의 개선, 활동비의 적정성, 성공적 직무인식 증진을 위한 아동접촉근무 강화방안 등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 중심어 : | 아동안전지킴이 | 아동안전지킴이집 | 민간경비 | 범죄예방 | 일상활동이론 |

Abstract

According to the children's crime risk is increased, national police agency has implemented child safety keeper system since 2009. Despite the importance of child safety keeper studies, there was no seeking of empir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for the opera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safety keeper system.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ll the child safety keepers were surveyed by quota sampling in the 16 provincial police agency. Questionnai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Av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is the need to strengthen links with child safety keeping house, participatory setting for the patrol rout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adequacy of allowance, strengthening contact with children for job success awareness.

■ keyword : | Child Safety Keeper | Child Safety House | Private Security | Crime Prevention | Routine Activities Theory |

* 본 논문은 한국콘텐츠학회 2015 춘계 종합학술대회 우수논문입니다.

접수일자 : 2015년 07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9월 02일

수정일자 : 2015년 08월 07일

교신저자 : 김문호, e-mail : moon16459@honam.ac.kr

I. 서론

아동은 범죄자에게 용이한 범행의 표적이 된다. 잠재적 범죄피해자로서의 아동에 대한 차별화된 방법대책의 마련은 치안정책의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아동대상 범죄의 양태가 악화되면서 아동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은 한국사회의 아동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켰고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의 통학 등 이동로 주변에 위치한 문구점·슈퍼·약국 등을 경찰이 지정 협약하여 위협에 직면한 아동이 피신할 수 있도록 하고 업주의 보호 하에서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해주는 시스템이다. 외국에서 시행중인 유사제도로는 호주의 안전주택(Safety House), 캐나다의 골목부모 프로그램(block parent), 미국의 맥그러프 주택(McGruff House), 일본의 “어린이 110번의 집” 등이 있다[1].

그런데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고정성은 제도목적 달성을 곤란하게 만드는 중대한 약점이 된다. 지킴이집과 이격된 지점에서 발생하는 위협 상황에서는 무용하기 때문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이러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은퇴한 노인들을 선발하여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와 놀이터 등에 배치하여 동태적으로 아동의 안전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동안전 확보에 관한 경찰력의 한계를 민간영역에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치안서비스공동생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공동생산과는 차별점이 있다. 국가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의 목적에 아동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노년층 일자리 제공을 고려한 제도라는 점 등이다. 아동범죄 예방을 순수 민간 자원만으로 운용하는 것은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예산의 투입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를 목적으로 퇴직노인에 한정된 아동안전지킴이의 운용은 치안정책의 복지화 방안이 사회안전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아동안전지킴이의 주된 연령층은 70대 초중반이다. 선발과정에서 건강양호 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인한 신체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한 근무지도 및 근무욕구 향상을 위한 조치가 요망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보완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용한 정책적 방안들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연구의 내용은 2장에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고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설명하겠으며 4장에서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제언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일반적 논의

아동안전지킴이는 경찰서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를 거점으로 지역경찰이 지정한 곳에서 아동범죄를 포함한 제반적인 안전지원 활동을 근무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아동보호구역과 통학로, 놀이터·공원 주변 등에 대한 순찰 및 지도,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조치, 통학로 주변 아동안전지킴이집 등과 연계한 활동, 비행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취급 사항,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아동안전지킴이규칙 제13조, 경찰청훈령 제699호, 2013. 2. 28).

아동안전지킴이는 재향경우회 또는 대한노인회 회원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75세 이하 자 또는 아동범죄예방을 위해 봉사에 열의와 직무능력을 가진 자를 자격조건으로 한다.

경우회는 135만 명의 퇴직경찰관 및 퇴역 전·의경을 정회원으로 하고[2], 대한노인회는 64,000여개의 경로당에 약 300만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3]. 대한노인회 회원 중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선발대상자의 수가 미달일 경우 75세 이하의 일반인을 선발할 수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는 일반적으로 평일 3~4시간이다. 통상 오후 2시~6시 또는 오후 1시~오후 5시까지로 편성되며 2014년 기준시급은 5,560원이고 간식비를 포함하여 월 35만36백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2. 일상활동이론

범죄는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발생한 범죄의 원상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더욱이 강력범죄의 피해는 복구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히 아동의 범죄피해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 피해경험의 부작용이 작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예방에 관한 이론들은 범죄자의 범행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방식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대응을 고려한다. 그중에서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은 범죄 보다는 범죄자의 특성에 주목하는 예방을 강조하는데[4] 최소한 세 가지 요소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적당한 범행대상(suitable target)으로 사람, 물건, 장소를 의미한다. 둘째, 범죄를 차단하는 유용한 감시인(guardian)의 부재이다. 셋째, 동기화된 범죄자의 존재로 범행 착수이전에 적당하고 무방비 상태인 표적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기회와 개인의 생활양식 개념을 결합하고 있는데 생활양식은 범죄자에 대한 범죄대상의 근접성, 범죄자에 대한 범죄대상의 노출, 범죄대상의 매력정도, 범죄대상의 보호능력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상활동이론은 범죄기회감소와 경찰과 감시인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실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치안활동의 모델을 도출시킨다. 아동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못하여 그 자체로 적당한 범행의 목표가 될 수 있고 한국사회의 가정감시 부재환경의 증대현상과 이웃유대가 해체되는 주거양식의 확대로 인해 범죄를 차단하는 감시인이 감소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아동대상 범죄를 증가시키는 배경요인이 될 수 있다.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범죄가 발생하는 세 가지 조

건 중 유용한 감시인을 제도화시킴으로써 적절한 범행 목표물을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아동범죄예방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감시증대를 위한 순찰노선의 선정, 순찰기법, 지킴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예방정책의 개발과 운영은 안전행정 분야의 필수적 모델로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과 시민의 치안역량 자원에 대한 연합은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공동생산의 최대 장점은 상호 결핍요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에 의한 치안서비스는 주거지 중심 지역에서 경찰이 발견하기 어려운 범죄의 사각지대를 담당함으로써 경찰력의 공백을 보완[6]할 수 있다. 주거지 중심의 예방활동의 중요성은 아동 범죄피해에 대한 분석결과 등에서 증명되는데 예컨대, 아동성폭력범죄의 75퍼센트가 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7].

범죄예방은 범죄발견의 지속적 과정이다. 범죄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활용방식에 따라 예방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과 민간의 범죄예방 참여자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8]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동안전지킴이가 후미진 골목길 등을 도보순찰하며 습득하는 우범정보에 대한 실시간적인 경찰력의 투입은 치안서비스공동생산이 지향하는 이상적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은 범죄를 차단하는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범죄의 두려움(fear of crime)을 감소시키는 간접효과 측면에서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미국 플린트시 순찰실습 등에서 경찰의 도보순찰이 시민의 안전체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검증된 바와 같이 아동안전지킴이의 가시적 순찰의 출현만으로도 아동, 부모, 교사 등이 체감하는 범죄 두려움의 수준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민간부분의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은 공공경찰활동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며 경찰

과의 협조관계를 기준으로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형태, 개인적이고 적극적인 형태, 집단적이고 소극적 형태, 집단적 적극적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9]. 이 중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집단적이고 적극적 유형의 공동생산에 해당한다. 경찰 주도적 구성, 경찰 관련단체의 활동성, 민간역량의 경찰집행 참여성 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안전지킴이에 의한 치안서비스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순찰노선, 경찰의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된다. 또한 재향 경우회와 대한노인회라는 경찰유관단체의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속에 따른 직무수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의 소속,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4. 직무만족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직무만족이라는 개념은 근무자의 근무의욕과 관련된 심리적 상황을 대표한다. 로크(Locke)는 직무만족에 대하여 직무에 대한 평가결과로 인해 즐겁거나 긍정적인 정서상태라고 정의했다[10]. 직무만족의 수준은 직무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적절하다. 직무만족이 직무성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실증적인 분석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연구들이 인정하고 있다[11].

직무만족에 대한 측정은 전반적 수준에 대한 측정과 문항별로 구분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지만 전반적 직무만족을 측정할 결과가 문항별 측정도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더 나은 결과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2]. 물론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반적 질문과 항목별 질문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직무가 복잡하고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결과의 활용성을 고려해서 항목별 질문이 유용하고 단순한 비전문직 형태의 직무인 경우 전반적 질문이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의 고령적 특성과 직무내용의 단순성을 고려하여 전반적 직무만족도로 측정하여 종속변수를 선정하고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된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여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III. 연구설계 및 방법

1. 조사개요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실증적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배치된 아동안전지킴이다. 설문 조사는 아동안전지킴이가 근무하는 지구대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14년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이었다. 표본의 추출방식은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다. 다만 아동안전지킴이 배치인원 만으로 조사대상 경찰서를 선정하게 되면 지방청별 급지 상 불균형 발생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어 지방경찰청 별로 1급서 경찰서는 1개 이상 포함했다.

할당표본추출은 판단표본추출의 변형으로 추출된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미리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하위집단별로 표본수를 배정한 다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13]. 할당표본 추출방법은 왜곡된 표본 선정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문대상은 지역별 평균인원에 해당하는 아동안전지킴이가 배치된 경찰서 관할 초등학교 주변을 근무지역으로 하는 아동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역별 경찰서 관할 지구대의 평균 배치인원은 20명부터 44명까지였다.

아동안전지킴이가 고령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필수항목만으로 구성하고 설문지의 활자는 확대 제작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등은 빈도분석으로 조사하였다. 집단별 차이에 대해 티검증(T-test)과 아노바(ANOVA) 분석을 했다. 아동안전지킴이 근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응답결과는 통계프로그램(SPSS 20.0)으로 분석했다.

전국아동안전지킴이의 강제할당표는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할당표본 추출현황

지역	아동안전지킴이(n)	배치율 (%)	경찰서 (개)	경찰서 평균 배치 인원	조사 대상 경찰서	조사 지역	할당 표본 수 (명)	
							금지	인원
서울	702	10.9	31	23	3	S경찰서	1	22
						G경찰서	1	22
						E경찰서	1	22
부산	328	5.1	15	22	2	Y경찰서	1	20
						D경찰서	1	24
대구	236	3.6	10	24	2	D경찰서	1	26
						K경찰서	1	26
						N경찰서	1	28
인천	252	3.9	9	28	2	K경찰서	1	28
						S경찰서	1	28
광주	162	2.5	5	32	1	S경찰서	1	28
대전	156	2.4	5	31	1	J경찰서	1	30
울산	134	2.1	4	34	1	U경찰서	1	34
						S경찰서	1	36
						E경찰서	1	32
						I경찰서	2	34
						Y경찰서	3	28
강원	370	5.7	17	22	2	K경찰서	1	36
						D경찰서	2	20
충북	286	4.4	12	24	2	C경찰서	1	34
						J경찰서	2	26
충남	470	7.3	15	31	2	S경찰서	1	36
						K경찰서	2	34
전북	446	6.9	15	30	2	D경찰서	1	44
						W경찰서	2	30
전남	466	7.2	21	22	3	S경찰서	1	44
						N경찰서	2	22
						J경찰서	3	20
경북	538	8.3	24	22	3	K경찰서	1	34
						Y경찰서	2	24
						C경찰서	3	22
경남	540	8.3	23	23	3	J경찰서	1	24
						M경찰서	2	24
						H경찰서	3	20
제주	110	1.7	3	37	1	J경찰서	1	34
총 계	6,360	6.55	247	26.60	33	34개서	·	968

조사대상은 전국 16개 시도 34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960명으로 모집단 전체 6,360명을 기준으로 약 15%에 해당한다. 설문을 실시한 960명 중에서 노안으로 인한 표기곤란,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하고 최종 915부를 통계 분석했다.

2. 연구가설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의 논의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아동안전지킴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아동안전지킴이의 성별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2. 아동안전지킴이의 연령대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3. 아동안전지킴이의 소속에 따라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안전지킴이의 직무인식 및 환경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아동안전지킴이의 일일 도움제공 인원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비 적정성 인식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아동안전지킴이의 순찰노선 적합성 인식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경찰의 교육관리 및 감독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표 1]의 할당표에 근거하여 분석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빈도	%	지역	빈도	%	
			지역			
성별	남자	770	84.2	서울	63	6.9
	여자	120	13.1	부산	43	4.7
연령	50대	8	0.9	대구	47	5.1
	60대	196	22.3	인천	54	5.9
	70대	674	76.8	광주	28	3.1
소속	재향경우회	250	28.9	대전	29	3.2
	대한노인회	451	52.1	울산	33	3.6
	일반	165	19.1	경기	126	13.8
근무기간	10월 이하	313	34.6	강원	56	6.1
	11월 ~ 20월	238	26.3	충북	49	5.4
	21월 ~ 30월	161	17.8	충남	67	7.3
				전북	64	7.0
	31월 이상	192	21.2	전남	81	8.9
				경북	79	8.6
				경남	63	6.9
	제주	33	3.6			

설문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남성 84.2%(n=770), 여성 13.1%(n=120)였다. 연령은 70대가 76.8%(n=67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60대 22.3%(n=223), 50대 0.9%(n=8)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안전지킴이를 지원할 당시의 소속은 대한노인회가 52.1%(n=451)로 과반 이상 이었고, 재향경우회는 28.9%(n=250)였으며, 소속 없음은 19.1%(n=165)로 조사되었다. 근무기간은 10개월 이하가 34.6%(n=313), 11개월 이상 20개월 이하가 26.3%(n=238), 21개월 이상 30개월 이하가 17.8%(n=161), 31개월 이상은 21.2%(n=192)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아동안전지킴이의 만족도 인식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티검증(T-test)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3. 아동안전지킴이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

분석변수		성별		t-value (p-value)
		남자 (n=765)	여자 (n=115)	
만족 인식	평균값	4.13	4.28	-1.32 (.186)
	표준편차	1.152	1.166	

연령대에 따른 티검증(T-test) 실시 결과에서는 70대와 60대 이하의 집단에서 직무만족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4. 아동안전지킴이 연령대별 직무만족의 차이

분석변수		연령대		t-value (p-value)
		5-60대 (n=202)	70대 (n=701)	
만족 인식	평균값	4.13	4.28	.560 (.129)
	표준편차	1.095	1.238	

이어서 아동안전지킴이의 소속별 근무만족도의 차이를 위해 아노바(ANOVA)분석을 실시했다. 아노바 분

석(ANOVA)은 셋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할 때 이용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14].

아동안전지킴이의 소속에 따른 근무만족도 인식의 차이는 [표 5]의 분석결과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동안전지킴이 소속별 근무만족인식의 차이

요인	소속	N	평균	표준편차	F	P
근무만족	재향경우회	253	4.02	1.023	.157	.692
	대한노인회	442	4.17	1.123		
	무소속	164	4.04	1.272		

2.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성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업무연계의 원활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352명으로 약 36.7%였다. 부정적 인식도가 절대적 기준에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아동안전지킴이제도가 아동안전지킴이 집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응답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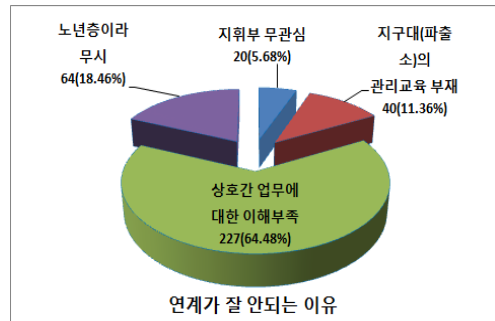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가 안되는 이유

‘상호간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64.5%(227명), ‘노년층에 대한 무시’ 18.5%(65명), ‘지구대(파출소)의 관리교육 부재’ 11.4%(40명), ‘지휘부 무관심’ 5.7%(20명) 순으로 응답했다.

3. 다중회귀분석

아동안전지킴이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모집단에 대해 예측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다중회귀분석은 종속변수를 설명해 주는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회귀분석을 말한다[15].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더빈왓슨(Durbin-Watson) 지수를 검정한 결과, 1.853으로 자기상관이 없었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1.012 ~ 1.761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없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종속변수가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이며,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으므로 회귀분석에 적절하였다.

표 6. 다중회귀 분석결과

	B	β	R^2	F
Constant	2.527		.132	17.833***
일일 도움제공 인원	.048	.088**		
활동비 적정성	.163	.164***		
순찰노선 적합성	.182	.179***		
교육관리 및 감독	.126	.125**		
성별(더미)	-.077	-.026		
연령층	-.048	-.035		

p<.05 * p<.001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인식 및 특성이 근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일 도움을 제공한 아동의 인원(p<.05), 활동비의 적정성(p<.001), 순찰노선의 적합성(p<.001), 교육관리 및 감독의 적합성(p<.05)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찰노선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높을수록(B=.182), 활동비가 적합하다고 인식할수록(B=.163),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관리와 감독체계가 양호하다고 인식할수록(B=.126), 하루 평균 도움을 제공한 아동의 숫자가 많을수록(B=.048) 근무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아동안전지킴이의 연령과 성별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V. 제언 및 결론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아동의 범죄피해 방지 등 전방적인 아동의 안전증진을 도모하는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실천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 제도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집단별 인식의 차이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집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 중 가장 많은 것은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 64.5%(227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의 문제점과도 관련된다.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의 책임감 결여와 실질적인 관리감독의 곤란성[16]으로 인하여 아동안전지킴이와의 협력관계의 조성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업주 및 종업원과 지킴이와의 협력관계 설정을 위한 경찰의 관리지원과 교육홍보가 요구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순찰노선의 적합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찰노선 설정에 아동안전지킴이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적절한 활동비 지급이 요청되었다. 다만 보상의 적정성은 상대적 인식이 작용하는 영역[17]이므로 유사한 여건에 있는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무수행의 성공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일 도움제공 인원”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무 시 아동의 접촉기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근무편성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의 원활한 교육감독이 직무만족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역경찰에 의한 수시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현행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시간이 평일 오후 2시~6시 또는 오후 1시~오후 5시까지로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향적 검토가 요구되었다. 도심지역의 경우 방과 이후 활동이 증가하여 오후 6시 이후에도 옥외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말과 공휴일에 아동활동이 집중되는 공원 등지는 아동범죄의 취약지

역이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순찰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적극적 봉사의지가 중요하므로 특정 소속에 대한 지원자격 요건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면접평가 등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안전지킴이 프로그램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중요한 만큼 제도에 관한 경찰관서의 홍보노력 등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김상운,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개선방안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2호, pp.35-8, 2012.
- [2] <http://www.ex-police.or.kr/expolice/profile.php>
- [3] http://www.koreapeople.co.kr/company/ceo_new.asp? L1=1&L2=1
- [4] Cliff Roberson and Michael L. Birzer,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theory Meets Practice*, pearson education, 2010.
- [5] 이민식, 김상원, 박정선, 신동준, 윤옥경, 이성식, 황성현 공역, *범죄학 이론과 유형*, 세계이저리닝 코리아, 2008.
- [6] 최선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대왕사, 2002.
- [7] 진계숙, 백석기,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3호, p.372, 2010.
- [8] Cliff Roberson, and Michael L. Birzer, *Introduction to Private Security theory Meets Practice*, pearson education, 2010.
- [9] 최선우,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 대왕사, 2002.
- [10] E. A. Locke, *The Nature and Causes of Job Satisfaction*,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76.
- [11] G. D. Gottfredson and J. L. Holland,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fluence of Congruence: Job Satisfaction, Competency

Utilization and Counterproductive Behavio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ical*, Vol.37, pp.389-398, 1990, 이영면, 직무만족의 의미와 측정, 경문사, 2011, 재인용.

- [12] 이영면, *직무만족의 의미와 측정*, 경문사, 2011.
- [13]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05.
- [14] 한승준, *조사방법의 이해와 SPSS활용*, 대영문화사, 2006.
- [15] 권경득, 유성호, 이모영, 허태희 공저, *사회과학 통계분석*, 법문사, 2006.
- [16] 김상운,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개선방안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4권, 제2호, pp.35-38, 2012.
- [17] M. M. Gruneberg, *Understanding Job Satisfaction*, Weatherby Woolnough, 1979.

저자 소개

김 정 규(Jung-Gyu Kim)

중신회원



- 2006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경찰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경찰인사·조직관리, 범죄학

김 문 호(Moon-Ho Kim)

정회원



- 2005년 8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형사법전공
- 2009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형법, 형사소송법